

업무 수탁자의 합리적 선정 기준과 위탁 취소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일반규정인 서울특별시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 16조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 정하며,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이를 위탁하는 경우 에는 일반적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인 동 조례 제6조 내지 제8 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 등에 비추어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. 종합의견입니다.

□건설기술관리법 관계법령에 의해 감리전 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 리 대상 공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100 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중 서울특별시 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주요시설공사, 조경공사, 기계설비 공사, 치수공사 등에 대한 감리업무의 시 행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단 체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이들 소규모 건 설공사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 예 방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 관계공무원의 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체계의 확립등 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 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다만, 조별 내용 검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사 감독 수탁기관에 대한 철 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탁 운영에 따 른 재원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건설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단계적 감축 운영 등이 업무추진 추이에 따라 반드시 병행하여 검토 및 조치 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('99. 10. 30)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부실 건 설공사의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 려는 것임.

- 4. 집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 관한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 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 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 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(감 리)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 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“소규모공사”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 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미만 공사로 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장(이하 시장이라 한다.) 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.
- 2.“감독업무”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 를 말한다.
- 3.“주요시설물공사”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 등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.
- 4.“조경공사”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 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·인조목·인